

해양수산부 소관품목(마른김, 조미김) 할당관세 물량 제2차 배정 공고

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758호(2024.5.9)에 따라 마른김, 조미김 할당관세 적용물량 배정 및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추천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

품 목	HS번호	배정물량 (kg)	용 도	신청자격	적용관세율 (%)	수입이행 기한	시장공급 기한
마른김	1212-21-1010	200,000	일반내수용	실수요업체, 수입업체	0	2024.8.16 (수입신고 수리일 기준)	2024.9.14
조미김	2008-99-5010	25,000	일반내수용	실수요업체, 수입업체	0		

※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고 납세의무자의 자격을 갖춘 자

*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미신고한 경우, 수입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음

2. 용어의 정의

- (물량) 배정 : 할당관세적용 신청 조건을 충족한 신청업체에 한해 해양수산부 공고, 협회 세부요령 및 공고로 사전 공지한 기준에 따라 할당관세적용 물량(수량)에 대한 수입권을 안배
- 배정물량 : 할당관세적용 신청업체가 추천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수산물 물량을 의미하며, 정해진 수입이행기간 내에 순중량으로 전량 수입신고 수리 필요
- 순중량(NET WEIGHT) : 배정 신청물량(수량), 배정물량(수량),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 상의 수량(물량), 할당관세적용추천서 상의 물량(수량), 수입이행물량(수량), 수입미이행물량(수량), 운송 중 감모량, 수입이행실적증빙 상의 중량 등 수산물 할당관세 단위는 모두 순중량
- 수입이행 : 차수별 물량배정 통보일(계약체결일, 이하 '계약일'이라 한다)부터 차수별 공고된 수입이행 종료일까지 배정물량 전량을 순중량으로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적용받아 수입이행기간 중의 날짜로 수입신고수리 하는 것
- 수입이행기간 : 수입이행을 100% 완료해야 하는 기간으로, 할당관세 추천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기한(2024.8.16. 까지임)
- 수입신고수리일 : 수입통관 완료 후 세관에서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리일자(수입신고필증 상의 접수일이 아님, 2024.8.16. 까지임)
- 시장공급(기한) : 할당관세적용 추천서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(물량)을 가공, 도소매, 유통업체 등에 공급(판매)하는 것(기한)(금차의 경우 2024.9.14. 까지임)으로 수입이행기한 및 추천서 유효기간과 별개이며, 추천서 발급일에 따라 시장공급 기한 내에서 추천서 별 시장공급 종료일은 상이함
(예: 판매완료(확정)일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만일 2024.8.1.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, 시장공급기한은 2024.8.30.까지로 최대 30일까지임)

- 판매완료 예정(확정)일 : 할당관세적용 추천서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(물량)을 시장공급기한 내에 가공, 도소매, 유통업체 등에 공급(판매)를 완료하는 예정일(확정일)로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

3. 신청 방법 : 할당관세적용 추천 신청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신청기한 내 제출(24시간 제출가능)

- 신청서 제출 기한 : 공고게시일부터 ~ 2024.8.16.(금) 15시까지
- 전자우편주소 : gimhaldang@gmail.com 만 사용함
 - 신청자의 전산 장애 등으로 제출 불가 시 추천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
 - ※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신청해야 하며, 배정 물량의 미이행(수입이행기간 미준수, 시장공급기한 미준수 등)시 차기 추천 시 배제되므로 유의바람
- 추천신청서 작성 시 단위 : kg (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,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올림)
- 신청서류
 - ①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.
 - ② 시장 공급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.
 - ③ 선하증권(B/L, 또는 AWB) 사본 1부.
 - ④ 송장(Invoice) 및 포장명세서(P/L, Packing List) 사본 각 1부.
 - ⑤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(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) 1부.
 - ⑥ 영업신고(허가, 등록)증 사본 1부.
 - ⑦ (영문)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(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시 대행자도 제출)
 - ⑧ 인감증명서(법인 또는 개인) 1부(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시 대행자도 제출)
 - ※ 인감증명과 사용인감이 구분된 경우 사용인감계 1부 포함
 - ⑨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<붙임1> 1부.
 - (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시 대행자도 제출)
 - ⑩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준수 및 협조 동의서 <붙임2> 1부.
 - (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시 대행자도 제출)
 - ⑪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내역(excel : 추천공고문 첨부파일로 제공)
 - ※ 제출서류 중 발행(발급)일이 있는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업체의 할당관세적용 추천서 신청일 사이 발급분에 한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로 인정함(단, 인감증명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행분은 인정함)

【제출요령】 전자우편 제출 시 2개 파일로 제출

① 신청 구비서류 (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통합제출)

(단,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로 제출시 해당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)

②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내역(엑셀파일로 제출)

- ※ 제출 서류 미흡 시 보완 요청하며, 제출 서류가 완비(서류의 종류 및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)된 경우, 해당 건 접수일시를 추천서 접수일시로 함
- ※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세부요령 제4조에 따른 적합성 등 확인 후 적합한 경우 발급

4. 추천 조건

- 본 공고게시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적법하게 수입신고 수리(수입신고필증상 수입 신고수리일이 해당 기간 이내)되는 물품에 적용
- 2024년 8월 17일 이후에 수입신고수리(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수리일 기준)되는 물품은 적용 불가하며, 추천서의 발급일 이전 소급적용도 불가함
- 세부요령 제4조제1항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신청물량의 일부만 배정할 수 있음
- 만일 해당 추천서의 수입신고수리일이 2024년 8월 17일 이후일 경우 해당 추천서 적용 물량은 무효로 하고 세부요령 제10조에 따른 추천배제 등 제재를 받음

5. 할당관세적용 추천서 발급 및 업체 교부

- 추천서 발급 기간 : 공고게시일부터 2024.8.16. (금) 17시까지
- 추천서 교부 방법 : 이메일 또는 팩스(신청서류 접수는 이메일만 접수)
 - ※ 신청서류가 완비된 신청 건에 한해 적합성 등을 확인 후 2근무일 이내에 발급
 - ※ 추천서 발급 횟수 및 시간 : 매 근무일 15시(오후 3시, 매 근무일 11:00 까지 접수분에 한함) 와 17시(오후 5시, 11:00 이후 15:00까지 접수분에 한함) 2회 발급
 - (예 : 전 근무일 15:01에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 근무일 11:00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함께 처리)

6. 추천배제

- 추천배제 대상

「마른김, 조미김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 제10조」

제10조(추천배제 등 제재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납일이 속한 적용기간 또는 도입기간의 나머지 기간 및 경과 다음날로부터 1년간 한국수산물무역협회가 추천하는 모든 품목의 할당관세 신청(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을 포함한다)에서 배제할 수 있다.

1. 정해진 기한까지 배정받은 물량을 95.0%(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)미만 수입이행한 자 또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9조에 따른 판매실적보고를 이행하지 않은자
2. 제4조 시장공급계획을 미준수한 자
3. 제9조 판매실적 증빙자료 미제출자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자
4. 기타 추천물량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등 할당관세 관련 법규 및 추천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

7. 유의사항

- 추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임(유효기간 마지막 일자가 근무일 여부 불문)
- 할당관세 추천 업체는 수입통관 수리 후 5일 이내에 (본 협회 근무일 기준) 수입이행실적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추천배제 등 제재조치함
 - ※ 수입이행실적증빙 제출 등 추천서 발급 이후의 절차는 추천서 교부 시 별도 안내
 - ※ 할당관세적용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업체의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사용하여 2024년 8월 16일까지 수입신고수리(수입신고필증 상 신고수리일 기준)해야 수입이행실적 인정

- ※ 배정 물량은 수입이행기간 내 수입신고수리 완료해야 하나,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수입이행실적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수입 미이행으로 간주된 경우, 다음 차수 배정 시 추천대상에서 배제되며 기존 추천물량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의 적용도 취소되고, 이에 따라 세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사후 조치 대상이 됨
- ※ 업체 편의를 위해 물량 배정자와 우리협회 간 계약서 날인 절차는 없으나 추천신청서를 제출하고 추천서가 발급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함
- 할당관세적용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신속히 통관할 의무가 있으며, **추천물품 판매실적보고 (수산물협회에 문의)**를 해야 하며, 관련 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해야 함
- 시장공급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**시장공급기한인 2024년 9월 14일까지 완료해야함(추천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30일 까지)**
- 할당관세적용 물량 시장공급 후 **“(별첨) 할당관세추천서 적용 마른김, 조미김 시장공급 실적 보고(양식)”**을 작성하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[(전자)계산서, 거래명세서, 출고 확인서 등]와 함께 **시장 공급기한 종료일 후 본 협회의 5근무일 이내에 전자우편으로 제출**해야 하며, 미제출 시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세부요령 제10조에 따라 조치
- 본 협회는 할당관세 추천서 발행요건 충족 시 추천서 발행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세청(세관)에서 해당 추천서 적용 거절 시 협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신청업체가 동의하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

12. 기타
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758호(2024.5.9) 및 “마른김, 조미김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(한국수산물협회)” 을 참고바람

2024. 6. 28.

(사)한국수산물협회장

[별지 제1호서식]

접수번호		처리기간						
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								
① 신 청 인	상 호		② 수 입 자	상 호				
	주 소			주 소				
	대표성명			대표성명				
	사업자등록번호			사업자등록번호				
	전화번호	회사: (HP:)		전화번호	회사: (HP:)			
팩스번호		팩스번호						
③ 신청내용								
세번부호 (HS)	품 명	수량 및 단위 (kg)	금 액 (USD)	수입국	수입신 고 예정일	보세구 역출 반 예정	관매 완 료 정 (예 일)	용 도
								일반 내수용
<p>「관세법」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,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758호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으려고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사)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귀하</p>								
첨부서류 : ① 선하증권(B/L, AWB)사본 1통							수수료	
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(단,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)							없음	
③ 그 밖에 추천에 필요한 서류		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추천번호 :

시 장 공 급 계 획 서

○ 신청물량: _____ kg

○ 공급계획

(단위 : 개, kg, 천원)

판매완료(예정) 일자	거래업체	수 량	중 량	금 액	B/L No.

※ 신청물량 전량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 판매완료(예정)일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(금액은 생략 가능)

위 계획서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것을 서약합니다. 또한, 공급계획을 위반할 경우 김(마른김, 조미김)할당관세추천세부요령에 따른 제재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상호
대표자 (인)
주소

20 . . .

(사)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(인)

[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]

(사)한국수산물협회는 김(마른김, 조미김)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에 의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-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자(수입자 포함) 및 추천품목에 대한 관리
- 판매 및 가공실적 분석 및 유통실태 등 현황 파악 활용
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
필수항목	신청인(상호, 주소, 대표성명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이메일주소,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) 수입자(상호, 주소, 대표성명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이메일주소,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)
선택항목	대리인(성명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, 판매 및 생산 실적(판매가격, 판매처, 판매량, 생산실적, 재고현황 등)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준영구

4. 상기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동의 거부 시에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수집·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정보주체가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
동의합니다. 동의하지 않습니다.)

5 제3자 제공 (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7조에 의거,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)

- 제3자 제공기관 : 해양수산부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, 식품의약품안전처, 지방자치단체, 국회, 감사기관
- 제3자 제공목적 : 판매실적 분석 및 유통실태 연구 활용
- 제3자 제공항목 : 신청인/수입자(상호, 주소, 대표성명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
- 제3자 제공기관의 보유·이용기간 : 준영구
-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동의 거부 시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동의합니다. 동의하지 않습니다.)

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상호명 :

대표자 : (인/서명)

(사)한국수산물협회장 귀하

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준수 및 협조 동의서

당사는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및 세부요령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·이행하겠으며,

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기관 또는 추천기관에서 당사 할당관세적용 수입품목에 대해 판매실적, 자사제품 가공실적, 보관창고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관계기관 고발 등 민·형사상 조치에도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.

업 체 명 :

대표자명 :

(인)

*직인, (사용)인감

20 년 월 일

(사)한국수산무역협회장 귀하